재정경제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5개의 회계예규를 개정(2005.6.17)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7-19, 2005.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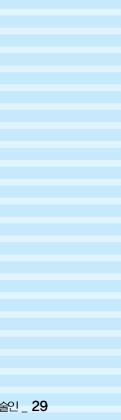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상략)	<b>제6조(심사기준등)</b> ① (현행과 같음)
2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 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 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 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움 또 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 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 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    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    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    용평기BB-이상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가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의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    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결우 BB- 이상    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    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    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의경우 BO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    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현 행	개정
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    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 (생략)    ④재무상태비    율	<u>에 준하는 등급 이상</u> <u>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u> <u>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u> <u>사: 80점이상</u> <u>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u> <u>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u> ③ (현행과 같음) ④ <u>재무제표</u> 등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① (상략) ②(	재용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 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략) ②	<b>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b> ①현행과 같음) ②
 1 <u>재무비율-</u> <u>재무비율-</u> 2. (상략) ③ (상략)	 1 <u>재무제표 등</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1] <u>재무비율</u> 에 의한 경영상태부 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 <u>재무제표 등에</u>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가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가금이 심사가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가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가준일 이전    기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    시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기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전력기술인 \_ **29**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 · · · · · · · · · · · · · · · · · ·						개정			
전 1998 111 111 11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 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 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 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 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 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峰 의 (평원 	평점이 다른	법어음) 법신용; 경우  용평기	에 대한 평가등급 높은 평 가등급을	
		신용평기등급			网络莺	기업 어음에		공사규모 (추정가격 기준) 별 평점		
桥人室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	공사규도 1,000 억원	연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1,000 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AAA	_	AAA	이상 15.0	이상 12.0	ААА	-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 급 AAA에 준히는 등급	15.0	12.0	
AA A BBB	A1 A2 A3	AA A BBB	15.0 14.0 13.0	12.0 11.5 11.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A에 준 하는 등급	15.0	12.0	
BB B	B B-	BB B	12.0 11.0	10.0 9.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기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14.0	11.5	
4ā10000	Colph	네 <b>0</b> 00	10.0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기등급 BBB에 준 하는등급	13.0	11.0	
					BB	В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7등급 BB에 준 하는등급	13.0	11.0	
					В	В-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기등급 B에 준하 는 등급	11.0	9.0	
					CCC이하	C 이하	회人채에 대한 신용 평기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8.0	
<u>〈신</u>	<u>실</u>				6 2 2	월17일 조(적용  찰공고	<u>부칙</u> 일 이 회계여 부터시행한 례) 이 예규 를 한 후 실 전심사부터 적	가 <u>.</u> 시행일 시하는	<u>이후에</u> 입찰참	

## 적격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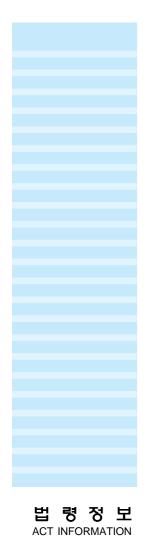
(재경부 회계에규 2200.04-149-16, 2005.6.17)

신·구조문디	田山
--------	----

	현 행					개정		
별표 적격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형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	격이 100	억원 이상인 공	공사	1. 추정	3기격이 1	00억원 이상	인공사	
_되, 신	<u> 왕방법</u> PQ점수를 적 대한 공사규 배점한도는	모(추	<u>-PC</u> 되	, 심사분이	는 PQ점수를  에 대한 공사  별 배점한도	·\규모(추		
	광	구모(추정가격기준)별 비	쎰		와	무모(추정가격 기준)별 비	배점	
심사분야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심사분야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신인도	±3	±3	±3	
을 준 분야 율외의	용하여 평 심사항목중 비심사항독	사는 PQ심시 기하되, 기술 7 1술개발 투 은 제외 기능	<u>능력</u> <u>자비</u>		이히용죽 을 형시심 10 스 디오월	공사는 PQ;   평가하되, 2   평가하되, 2   	기술능력 발 투자 의 기능	
제4조 관과 · 보증기 최근이 채, 기 에 대	및보호에관힌 의한 지정평 금법에 의한 가준일 이전 유효기간내 도 기업신용 기둥급을 기준 하는 경우 다 가	기기 신용 기장 회사 평가	지의지	4조제4호    업무를  기 심사기    평가한 <u>-</u> 기업어음    또는 기 = 도는 기	이용및보호에 3 제1호 또는 영위하는 신성 문일 이전 7 유효기간내 회 3에 대한 신형 업신용평가등 성상태를 평가 표에 의하여 평	· 제4호 용정보업 장 최근 과사채또 용평가동 급을 기 하는 경		



전력기<mark>술인 \_ 31</mark>



현 행							개정				
		신용평가동				<u>ا</u> لالم	기업어음		(추정)	공사규모 'ŀ격 기준) 별	평점
	기업	기업		대추정가격 7	준)별 평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1,000 억원	1,000억 원미만 500억원	500 억원
회人大批	어음	신용 평가	1,000 억원 이상	1,000 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회사채에 대한신용 평가등급 AAA에	생이 0.02	0상 이상 33.0	미만 35.0
AAA		AAA	30.0	33.0	35.0			준하는 등급	00.0	00.0	00.0
AA+, AAQ, AA-	A1	AA+,AAQ,AA-	29.0	32.0	34.0	AA+,		회사채에 대한 신			
A+	A2+	A+	28.6	31.6	33.6	AAO,	A1	용평7등급 AA+,	29.0	32.0	34.0
A0	A20	A0	28.3	31.3	33.3	AA-		AAO, AA-에 준 하는등급			
A-	A2-	A-	28.0	31.0	33.0			회사채에 대한 신용			
BBB+	A3+	BBB+	27.5	30.5	32.5	A+	A2+	평가등급 A+에 준 하는등급	28.6	31.6	33.6
BBB0	A30	BBB0	27.3	30.3	32.3			회사채에 대한 신			
BBB-	A3-	BBB-	27.0	30.0	32.0	A0	A20	용평가등급 A0에	28.3	31.3	33.3
BB+, BB0	B+	BB+, BB0	25.7	28.7	30.4			준하는 등급			
BB-	B0	BB-	25.0	28.0	29.5	A-	A2-	회사채에 대한신용 평기등급 A-에 준	28.0	30.0	22.0
B+, B0, B- CCC+ 이하	B- C이하	B+,B0,B- CCC+이하	23.0 20.0	26.0 24.0	27.0 25.0			하는 등급	20.0	30.0	33.0
	000		20.0	24.0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신용 평가등급 BBB+에 준하는등급	27.5	30.5	32.5
						BBBO	A30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BO 에 준하는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0.0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BB0에 준 하는등급이하	25.7	28.7	30.4
						BB-	В0	회사채에 대한신용 평기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28.0	29.5
						B+, BO, B-	B-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 B0, B-에 준 하는 등급 이하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기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0	24.0	25.0
<u> </u>	설〉							<u>부칙</u>			

제1조(사행일) 이 회계여규는 2005년

 현 행	개정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 부터 적용한다.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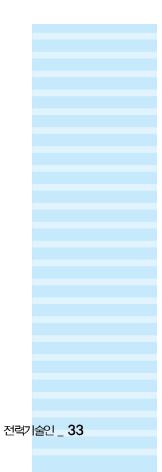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3-5, 2005.6.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b>제3조(제한기준)</b> ①~④(생략) 〈신 설〉	제3조(제한기준) ①~④(현행과 같음) ⑤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 다.
<u>〈신 설〉</u>	<u>부칙</u> <u>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 17일부</u> <u>터 시행한</u> 다.

출처:좋은생각 *		
ALLE	거짓말	머리로 말하는 검은 거짓말
100		가슴으로 말하는 하얀 거짓말
Mer .		그를 속이고 나를 속이지만
and the second		때로는 그를 살리고
F		나를 살리는 거짓말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1-6, 2005. 6.17)

신ㆍ	표비개문조두	

		 현 행	개정
		제11 <b>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b> ① ~ ② (상략) 〈 <u>신 설</u> 〉	재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 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 형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u>6.</u> (생략) ②~ ④ (상략)	
	_	<u>〈신 설</u> 〉	<u>부칙</u> <u>이 회계여규는 2005년 6월17일부</u> <u>터 시행한다.</u>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재경부 회계여규 2200.04-105-9, 2005.6.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b>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b> ① (상략) ② 	<b>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b> ①(현행 과 같음) ②
있다. <u>〈후단 신설</u> 〉	
<u>〈신 설</u> 〉	<u> </u>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내용 안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33호
- □ 입법예고기간: 2005.5.13 ~ 6.23
-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Tel. 02-509-7236)
- □ 전문참조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불법제품 단속기관을 설립하고,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41호, 2005.3.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사행령 개정령
  - 1)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 록 함.
  - 2) 정기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인증·안전검사 표시에 관한 보고·검사 업무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호에 위탁함.
-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사행규칙 개정령
  - 1) 안전인증대상품목에 안전성이 요구되는 음식물처리기, 반신욕조 등 15품목을 추가함.
  - 2) 안전인증 신청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3) 공장심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
  - 4)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5) 정기검사 이외에 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6) 안전인증취소 및 개선명령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sup>36</sup>\_Electric Engineers 2005. 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고 공고번호 : 노동부공고제2005-174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6. 11 ~ 7. 1

- □ 관련문의 : 노동부 안전정책과(Tel. 02-503-9744/5)
- □ 전문참조: 노동부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및 과장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근로자건강확보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영업비 밀에 의한 비공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제도 신설

- (1)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을 받아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안전보건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수행능력을 정확히 피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2)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표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경쟁을 촉 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1) 종전에는 법령을 위반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여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업무정 지를 할 경우 대행 사업장의 안전 · 보건관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장 의 안전 · 보건관리상태를 유지 · 증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방호장치 성능검정 면제대상 확대

(1)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는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방호장치 성능검정기관이 경인지역에 말집되어 있어 지방에 소재하는 방호장





법 령 정 보 ACT INFORMATION 치 제조업체의 경우 원거리 출장등으로 인해 시간 및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 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타 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안전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도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3) 방호장치 제조업체의 성능검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 (1) 종전에는 고시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주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결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 어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함.
- (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시하는 물 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칭 등을 기재토록 함.
- (3) 유해회학물질에 대한 유해 · 위험정보제공 등 근로자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함 으로써 법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S. March	
	쓰레기통비우기
200	비우는 일 없이 채우기만 하는 삶과 깨끗이 비우고 다시
	채우는 삶은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쓰레기통을 손으로
I asile	싹 씻어 놓은 날,마음도 경안하여 얼마나 가볍고 가뿐하
	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 몸을물로 씻고햇볕 속에서 있는것 같습니다.
Y	출처:좋은생각